

제천 도시관리계획(개발진흥지구)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9. 11. 5. 제 천 시 장
- 회 부 일 : 2009. 11. 6.
- 상 정 일 : 2009. 11. 12./16.(제1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,3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지역개발과장 함대회)

가. 제안이유

-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 30,000㎡이상의 개발행위는 사업시행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아야 하며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)
- 개발진흥지구와 같은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할 경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 반영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)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
 - 위 치 : 봉양읍 장평리 49번지 일원 A=251,930㎡
 - 근 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~제30조
 - 결정(안) : (주)삼표이앤씨 제천공장 건설을 위한 산업형 개발진흥지구 지정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5	봉양 장평	산업형개발 진흥지구	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49번지 일원	-	251,930	251,930		-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광신)

- 본 조례안은 (주) 삼표 이엔씨 공장증설 예정지로 결정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시장·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-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49번지 일원 251,930㎡에 대하여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, 공장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경계를 중심으로 전체 면적의 40.2% 102,291㎡의 녹지용지를 구획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공장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148톤은 지하수 4개소를 개발하여 사용토록 계획 되었으며, 300명의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는 자체정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.
- 본 안건은 산업형 개발진흥지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계획되었으며, 공장건설을 위한 지구결정 계획이므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충실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.
- 또한, 지구내 조성되는 완충녹지에는 주변 식물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수목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고, 이를 지구단위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은?(김병창 위원)

-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청취한 사례는?(최종섭 위원)
-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될시 달라지는 점은?(유영화 위원)
-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비산먼지, 소음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지역주민의 설득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바람.(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)

나. 답변요지 < 지역개발과장 합대회 >

- 초기단계부터 비용을 사용자가 투자하였고, 환경영향평거나 토지 계획안 수립에 추가부담이 소요됨으로 비용보존을 위하여 계획대로 이행할 것으로 예측됨
- 2월 구미마을 인접주민 63명을 초청하여 회의를 하였음. 공장견학과 지역주민의 취업에 관한 내용이 논의 되었음
-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함. 지구지정을 안하면 개발행위 허가 면적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평이하 9천평 이내의 범위로 한정함.

5. 소 수 의 견

“ 없 음 ”

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7. 심 사 결 과

“ 의 견 채 택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 도시관리계획(개발진흥지구) 결정에 대한 의견안 1부. 끝.

제천 도시관리계획(개발진흥지구) 결정에 대한 의견안

【 의견정취사유 】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 30,000㎡이상의 개발행위는 사업 시행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아야 하며,
- 개발진흥지구와 같은 용도지구의 지정·변경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【 검토의견 】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“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”라는 규정에 따라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, 대주민 설득과 애로사항 파악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, 관련법령에 따라 미이행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.
-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는 제천에 진입하는 입구로 도시미관 저해와 주변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, 비산먼지나 소음, 하천오염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됨.
-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과 주변 환경피해 예방 계획, 비산먼지나 소음발생 예방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도시관리계획(개발진흥지구) 결정이 필요함.

2009. 11. 16 .

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